

## ■ 업무내용

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

- 1.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
- 2.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- 3.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
- 4.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
- 5.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- 6.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
- 7.시장·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(徵求), 운영규정 작성 지원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기본금

법인	개인
5억원 이상	10억원 이상

### 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<p><b>상근인력 5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·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,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.</li> </ul> <p>1) 건축사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</p> <p>2)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</p> <p>3) 법무사 또는 세무사</p> <p>4)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인중개사·행정사</li> <li>- 정부기관·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</li> <li>- 도시계획·건축·부동산·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</li> <li>-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,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</li> </ul>

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.

※ 1), 2) 인력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, 4)의 인력은 2인을 초과할 경우 2인으로 본다.

### 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